

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0.12.28] [국무총리훈령 제00562호, 2010.12.28, 일부개정]

제1조(규제개혁작업단의 설치)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과 경쟁제한 관련 규제개혁과제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0.12.28>

[제목개정 2010.12.28]

제2조(구성 및 기능) ①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규제개혁작업단(이하 "작업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8.12.31>

1. 행정안전부 :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

2. 삭제 <2006.12.29>

3. 공정거래위원회 :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

②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의 취합 및 검토,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지도·점검, 규제개혁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의 정비지도, 지방자치단체 규제집행관행의 개선과 기타 규제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관련 규제개혁과제의 조사·연구를 담당한다. <개정 2008.12.31>

③ 삭제 <2006.12.29>

④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진입제한 행정규제와 공정거래관련 규제개혁과제 및 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·연구를 담당한다.

⑤ 각 작업단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,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행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12.31>

제3조(조직) ① 각 작업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,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08.12.31>

② 각 작업단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업무수행방법) ①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관리·감독 사항 등,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공정경쟁 제한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등 위원회가 의뢰한 소관규제개혁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. <개정 2008.12.31>

② 국무총리실은 각 작업단이 제출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. <개정 2008.12.31>

③ 각 작업단은 소관분야별 규제개혁 및 실적과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삭제 <2006.12.29>

제5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00562호, 2010.12.28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